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4. 4 선고 2018가단5381 판결 [점유회수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19나4055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4. 4 선고 2018가단5381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19. 3. 7

판결 선고 2019. 4. 4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피고는 군산시 D 지상 E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의료시설 1층병원
1,320제곱미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나,아,사,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
82.5제곱미터(25평)를 인도하고,2018. 8. 23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월 300만원의
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F요양병원의 운영자인 피고가 소외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고,그
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병원의 구내식당(이하 '이 사건 식당'이라고 한다)을 2년간 운영하도록
약정해 주었다.

이에 따라 원고는 2018. 7. 9.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, 피고는 2018.8. 23. 원고를
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위 식당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가버렸고, 원고는 위 식당 영업
수익금인 월 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다.

따라서,피고는 점유회복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고,점유침탈일인2018. 8. 23.부터
위 식당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.

2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 또는 점유자의 기관에 불과한 자는 독립하여 점유회수청구소송의
원고가 될 수 없는 것이고, 여기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점유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
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이다79853판결).

나. 구체적 판단

갑 제4내지 7호증,을 제9,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

취지에 의하면,피고는 2018. 7. 13. 군산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매수하여 F요양병원을 개설·운영하고 있는 사·실, 피고가 2018. 6. 6. 소외 G으로부터 위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억 원을 차용할 때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I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연대보증의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운영권을 2년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가 독립적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갑 제12호증의 5,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려다 관계기관의 허가를받지 못해 위 식당의 조리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

따라서,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독립하여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더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,

판사 김현덕

별지